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

2008. 9. 3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목 차

I.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	1
--------------------------------	---

II. 세부사업별 내역	2
--------------------	---

1. 유기질 비료지원	2
-------------------	---

2. 화학비료가격 및 수급안정대책	3
--------------------------	---

3. 살처분 보상금	3
------------------	---

4. 어선감척 확대지원	4
--------------------	---

5. 수입양곡대 지원	4
-------------------	---

<참 고>

1. 정부의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추경예산(안)	5
--------------------------------------	---

2. '07~'08 국가재정운용계획 규모(총지출기준)	6
-------------------------------------	---

3. 국가전체 총지출대비 농림수산부문 총지출비중	6
----------------------------------	---

4. 추경 세입예산(안) 총괄표	7
-------------------------	---

5.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표	7
-------------------------	---

6. 2008 농특세사업 세입·세출	8
---------------------------	---

I. 2008년도 제1회 농림수산식품부 추경예산(안) 개요

정부는 최근 유가급등과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우리 경제의 여건이 어렵워짐에 따라 「고유가극복민생안정종합대책」(’08.6.8)을 마련하여 4.9조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함

□ ('08 당초예산) 89,082억원 → ('08 추경예산안) 94,932(증 5,850억원)

○ 국제곡물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대책 : 3,000억원

- 수입양곡대지원(2,078) : 의무도입량(MMA)에 대한 가격 인상분
- 비료가격안정대책(302) : 수도작 607천호대상 화학비료 상승분 30%지원
- 유기질비료지원(620) : 지원물량 확대 및 단가 인상

○ 어업인 유가상승 지원 대책 : 2,350억원

- 어선감척(2,350) : 연안 750억원 1,500척, 근해 1,600억원 400척

○ 축산발전대책 : 살처분보상금 500억원

□ 추경안 포함시 '08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예산규모는 9조 4,932 억원으로 '08 당초예산 대비 6.6% 증가(증 5,850억원)

【분야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8예산 (A)	'08추경(안) (B)	증△감	
			(B-A)	%
◇ 예산*(A+B)	89,082	94,932	5,850	6.6
I. 사업비(A)	85,911	91,761	5,850	6.8
○ 농가소득·경영안정	22,746	22,746	-	-
○ 농촌개발·복지증진	13,351	13,351	-	-
○ 농업체질강화	6,700	7,820	1,120	16.7
○ 양곡관리·농산물유통	17,607	19,987	2,380	13.5
○ 농업생산기반조성	16,534	16,534	-	-
○ 수산·어촌	8,973	11,323	2,350	26.2
II. 기본적 경비(B)	3,171	3,171	-	-

* 일반지출기준(내부거래를 제외한 사업비)

II. 세부사업별 내역

< 세출 총괄표 >

(백만원)

구분	2007예산 (A)	2008예산		
		본예산 (B)	추경예산(안) (C)	증감 (C-B)
총계	363,626	418,913	1,003,905	584,992
일반회계	-	54,000	146,150	92,150
○ 유기질비료지원(지자체)	-	54,000	116,000	62,000
○ 화학비료가격안정대책	-	-	30,150	30,150
농특회계	229,417	203,800	488,800	285,000
○ 살처분보상금	100,000	70,000	120,000	50,000
○ 어선감척확대(지자체)	129,417	133,800	368,800	235,000
양곡관리특별회계	134,209	161,113	368,955	207,842
○ 수입양곡대사업	134,209	161,113	368,955	207,842

1. 유기질 비료지원

□ 화학비료 가격이 '07.12월말 대비 '08.6.19일 기준 100%이상 인상에 따라 화학비료 대체 사용에 필요한 유기질비료 지원을 확대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친환경농업을 유도할 필요

□ 유기질비료 확대지원을 위해 620억원 증액편성

○ 지원물량 : (당초) 154만톤 → (조정) 200(증 46)

- 추가확대물량 : 457천톤×58,000원/톤 = 26,506백만원

- 기 지원물량 단가인상 : 1,543천톤×23,000원/톤 = 35,489백만원

· 700원/1포(20kg) → 1,160원/1포(20kg)

○ 지원금액 : (당초) 540억원 → (조정) 1,160(증 620)

2. 화학비료가격 및 수급안정대책

- 국제 비료원료가격 급등으로 '08 상반기 보다 **63% 인상**(’08.6.19)
 - 수도작 농가에서 모내기 후 추수 전까지 주로 사용하는 **화학비료에 대하여 한시적인 농가부담 경감 대책 추진 필요**
- 가격 인상분 중 '08 하반기 사용량 333천톤에 대하여 고통분담차원에서 정부 30%, 농협과 업계 40%, 농가에서 30%를 부담하고 **정부부담금 302억원 신규 반영**
 - 1,005억원(추가 부담 예상액)×정부 30% = 302억원

【※ 비료 원자재 가격동향】

(단위 : \$/톤, CFR)

원재료	'07.12(a)	'08.4(b)	'08.7(c)	증감율(%)	
				b/a	c/a
요소	445	600	701	134	158
DAP(복비)	549	1,200	1,450	219	264
유황	171	660	760	386	444
인광석	220	385	493	175	224

3. 살처분 보상금

- 전국적인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보상금 부족분 발생**
 - 2008년 예산(700억원)은 브루셀라병, 결핵병, 돼지열병 등 방역과정에서 살처분에 소요되는 보상금만 편성·운영하였으나,
 - 4~5월 예상하지 못한 AI가 전국적으로 발생(33건)하여 닭·오리 8,460천수를 살처분함에 따라 AI 보상금 670억원 지출
- **살처분 보상금 부족분 지원을 위해 500억원 증액 편성**
 - AI 보상금 지급으로 매년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브루셀라병 등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부족액 500억원 추가 지원 필요
 - 추정 편성시 살처분 보상금 예산 : 1,200억원
 - AI : 670억원, 브루셀라 488, 결핵 36, 돼지열병 등 기타 6

4. 어선감척확대 지원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어업인 들의 어선감척 지원

- 수산자원 감소, 고유가 지속 등으로 어업여건이 날로 악화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고, 어민생계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연료비 비중이 높은 업종 중심으로 추가적인 감척사업 필요

□ 연·근해 어선의 감척을 위해 2,350억원 증액 편성

- 연안어선 : 50백만원 × 1,500척 = 750억원(국비 80%)
[지방비 188억원(20%)은 지자체 추경에 반영]
- 근해어선 : 400백만원 × 400척 = 1,600억원

5. 수입양곡대 지원

□ 국제쌀값 상승에 따른 '08년도 MMA 수입쌀 의무 도입을 위한 양곡대금 부족분 지원

- '08년도 도입하여야 할 의무 수입물량 28.7만톤(* 정곡기준)
- ※ 의무수입물량은 '04년 수입물량(20.5만톤)을 기준으로 매년 2만톤씩 균등 증량
- ※ 국제쌀값 상승율(전년말대비, '08.5월말기준) : 장립종 180%, 중단립종 60%상승
- 장립종 : 375 → 1,050\$, 중단립종 : 625 → 1,000\$(백미기준)

□ '08년도 MMA 수입양곡대 부족액 지원을 위해 2,078억원 증액 편성

[단위 : 톤, US \$, 백만원]

구분	'08예산(A)			실소요예산(B)			과부족(B-A)	
	물량	단가	환율	금액	단가	환율		금액
가공용	248,402	540	920	123,406	1,167	1,000	289,885	166,479
밥쌀용	63,055	650	920	37,707	1,254	1,000	79,070	41,363
계	311,457			161,113			368,955	207,842

주) 추정단가는 5월말 국제쌀값기준

< 참 고 >

1. 정부의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추경예산(안) : 4.9조원

□ 민생안정 추경 예산(안) 편성 배경

○ 최근 유가급등으로 우리경제 여건이 급격히 악화

- '07년말 이후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

* Dubai유가(평균, \$/b) : ('07.4) 64 → ('08.1) 87 → ('08.5) 120 → (6.13) 131

○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실질국민소득 증가는 둔화되는 상황(소비자물가(%)/실질GNI(%)) : '07. 1/4, 21/3.5 → '08. 1/4, 3.8/1.3

○ 이에 따라 정부는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08.6.8)을 마련하고, 고유가에 따른 저소득층·농어민·중소상인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08년 추경예산(안) 편성

□ 세입·세출 개요

○ '07년 세계잉여금 잔액*을 활용하여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지원 등을 위해 4조 8,654억원 세출 증액

세 입(억원)	세 출(억원)
· '07일반회계 세계잉여금 48,654	· 저소득층 유류비 및 대중교통망 확충 23,764
	· 농어민·중소상인 생활안정 지원 4,255(3,772)
	· 에너지절감 및 해외자원확보 지원 13,984
	· 의무적 지출 소요 6,651(2,078)
· 합 계 48,654	· 합 계 48,654(5,850)

*세계잉여금 15.3조원=교부금정산(5.4)+채무상환(5.0)+잔액(4.9), ()는 농식품부 소관

2. '07~'11 국가재정운용계획 규모(총지출기준)

(조원, %)

구 분	'07예산	'08예산		'09계획	'10계획	'11계획	연평균
		본예산	추경(안)				
○ 국가전체(A)	238.4	257.2	262.1	274.1	292.1	311.2	(6.9)
○ 농림수산부문(B)	15.6	16.0	16.6	16.3	16.6	17.2	(2.5)
○ 농림수산식품부	13.6	14.0	14.6	14.3	14.5	14.9	(2.3)
◆ 농림비중(B/A)	6.5	6.2	6.3	5.9	5.7	5.5	

1) 농림수산부문 총지출 : 농림수산식품부 + 농진청 + 산림청의 총지출 합계

3. 국가전체 총지출 대비 농림수산부문 총지출 비중

(억원, %)

연도별	국가전체 총지출 ¹⁾	농림수산부문		농림수산식품부		
		총지출 ²⁾	비중(%)	총지출	비중(%)	
'07	2,384,000	155,147	6.5	135,539	5.7	
'08	예산	2,572,000	159,241	6.2	139,548	5.4
	추경(안)	2,621,000	165,090	6.3	145,398	5.5

1) 국가전체 총지출 : 국가전체 예산일반지출에 기금일반지출을 포함(내부거래지출 제외)

2) 농림수산부문 총지출 : 농림수산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등 총지출 합계

* '08년추경(안)총지출(165,090억원): 농림수산식품부 145,398, 농진청 5,509, 산림청 13,187, 복권기금(산림) 135, 농축산경영자금 861

4. 추경 세입예산(안) 총괄표

(억원,%)

구 분	'07예산 (A)	'08 추경예산안			증감	
		당초	추경	계(B)	(A-B)	%
합 계	94,746	86,289	7,278	93,567	△1,179	△1.2
[일반회계]	111	166	-	166	55	49.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1,698	72,895	5,200	78,095	△3,603	△4.4
o 농어촌구조개선계정	48,085	35,778	2,850	38,628	△9,457	△19.7
- 일반회계전입금	31,949	16,151	2,850	19,001	△12,948	△40.5
o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33,613	37,117	2,350	39,467	5,854	17.4
- 타계정전입금(구조개선계정)	-	-	2,350	2,350	2,350	-
[양곡관리특별회계]	12,937	13,228	2,078	15,306	2,369	18.3
- 일반회계전입금	5,104	5,621	2,078	7,699	2,595	50.8

※ 타계정 전입금(2,350억원)은 농특회계내에서의 내부거래 이동금액임

5.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표

(억원,%)

구 분	'07예산 (A)	'08 추경예산안			증감	
		당초	추경	계(B)	(A-B)	%
예산 일반지출	86,307	89,082	5,850	94,932	8,625	10.0
[일반회계]	17,509	17,315	922	18,237	728	4.2
o 유기질비료지원(지자체)	-	540	620	1,160	1,160	
o 화학비료가격안정대책	-	-	302	302	302	
[농특회계]	38,876	40,271	2,850	43,121	4,245	10.9
o 살처분보상금	1,000	700	500	1,200	200	20.0
o 어선감척확대(지자체)	1,294	1,338	2,350	3,688	2,394	185.0
[균특회계]	16,985	18,268	-	18,268	1,283	7.6
[양곡관리특별회계]	12,937	13,228	2,078	15,306	2,369	18.3
o 수입양곡대사업	1,342	1,611	2,078	3,689	2,347	174.9

6. 농특회계 세입·세출 수지총괄표

(억원,%)

구 분		'07예산 (A)	'08추경(안)			증감		
			당초	추경	계(B)	(B-A)	%	
세 입	[구조개선계정]	48,085	35,778	2,850	38,628	△9,457	△19.7	
	○ 정부내부수입	35,513	27,312	2,850	30,162	△5,351	△15.1	
	- 일반회계전입금	31,949	16,151	2,850	19,001	△12,948	△40.5	
	[농어촌특별세계정]	33,613	37,117	2,350	39,467	5,854	17.4	
	○ 정부내부수입	301	333	2,350	2,683	2,382	791.4	
	- 구조개선전입금	-	-	2,350	2,350	2,350	순증	
	[임업진흥계정]	5,017	5,252	-	5,252	235	4.7	
	합 계	86,715	78,146	5,200	83,346	△3,369	△3.9	
	세 출	[구조개선계정]	48,085	35,778	2,850	38,628	△9,457	△19.7
		○ 일반지출	21,115	18,417	500	18,917	△2,198	△10.4
- 농식품부		20,599	17,794	500	18,294	△2,305	△11.2	
- 농 진 청		450	526	-	526	76	16.9	
- 통 계 청		65	96	-	96	31	47.7	
○ 내부거래지출		26,970	17,361	2,350	19,711	△7,259	△26.9	
- 농식품부		26,970	17,361	2,350	19,711	△7,259	△26.9	
[농어촌특별세계정]		33,613	37,117	2,350	39,467	5,854	17.4	
○ 일반지출		21,113	24,967	2,350	27,317	6,204	29.4	
- 농식품부		18,277	22,476	2,350	24,826	6,549	35.8	
- 농 진 청		88	-	-	-	△88	△100.0	
- 국토해양부		16	18	-	18	2	12.5	
- 소방방재청		590	668	-	668	78	13.2	
- 환 경 부		897	1,006	-	1,006	109	12.2	
- 교육과학부		504	-	-	-	△504	△100.0	
- 복지가족부		730	785	-	785	55	7.5	
- 노 동 부		12	13	-	13	1	8.3	
○ 내부거래지출		12,500	12,150	-	12,150	△350	△2.8	
- 농식품부		12,500	12,150	-	12,150	△350	△2.8	
[임업진흥계정]		5,017	5,252	-	5,252	235	4.7	
○ 일반지출		4,770	5,252	-	5,252	482	10.1	
○ 내부거래지출		246	-	-	-	△246	△100.0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자료

2008. 9. 3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목 차

1. 세부사업별 추경안 총괄표 1
2. 유기질 비료지원 2
3. 화학비료가격 및 수급안정대책 5
4. 살처분보상금 12
5. 연근해 어선감척 15
6. 수입양곡대 지원 20

1. 세부사업별 추경안 총괄표

【세입 예산(안)】

(억원,%)

구 분	'07예산 (A)	'08 추경예산안			증감	
		당초	추경	계(B)	(A-B)	%
합 계	94,746	86,289	7,278	93,567	△1,179	△1.2
[일반회계]	111	166	-	166	55	49.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1,698	72,895	5,200	78,095	△3,603	△4.4
○ 농어촌구조개선계정	48,085	35,778	2,850	38,628	△9,457	△19.7
- 일반회계전입금	31,949	16,151	2,850	19,001	△12,948	△40.5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33,613	37,117	2,350	39,467	5,854	17.4
- 타계정전입금(구조개선계정)	-	-	2350	2,350	2,350	-
[양곡관리특별회계]	12,937	13,228	2,078	15,306	2,369	18.3
- 일반회계전입금	5,104	5,621	2,078	7,699	2,595	50.8

※ 타계정 전입금(2,350억원)은 농특회계내에서의 내부거래 이동금액임

【세출 예산(안)】

(억원,%)

구 분	'07예산 (A)	'08 추경예산안			증감	
		당초	추경	계(B)	(A-B)	%
예산 일반지출	86,307	89,082	5,850	94,932	8,625	10.0
[일반회계]	17,509	17,315	922	18,237	728	4.2
○ 유기질비료지원(지자체)	-	540	620	1,160	1,160	
○ 화학비료가격안정대책	-	-	302	302	302	
[농특회계]	38,876	40,271	2,850	43,121	4,245	10.9
○ 살처분보상금	1,000	700	500	1,200	200	20.0
○ 어선감척확대(지자체)	1,294	1,338	2,350	3,688	2,394	185.0
[균특회계]	16,985	18,268	-	18,268	1,283	7.6
[양곡관리특별회계]	12,937	13,228	2,078	15,306	2,369	18.3
○ 수입양곡대사업	1,342	1,611	2,078	3,689	2,347	174.9

2. 유기질비료지원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2007예산	2008예산		
		본예산(A)	추경예산안(B)	증감(B-A)
○ 유기질비료지원(지자체)	(47,250)	54,000	116,000	62,00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축분뇨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추진
- 화학비료 가격 인상에 대응 유기질비료 공급을 확대하여 토양의 비옥도를 증진하고 화학비료 사용량을 절감 유도

□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지원
- 사업기간 : '99년('07년까지는 민간경상보조) ~ 계속
- 총사업비 : '08까지 2,871억원
- 지원형태 : 지자체 경상보조
- 지원조건 : 정액지원(1,160원/20kg)
- 시행주체 : 시·도
- 사업규모 및 내용 : '08까지 8,050천톤

□ 지원근거 및 추진 경위

- 지원근거 : 비료관리법 제7조(비료의 공급)
- 추진경위
 - '99~현재 : 가축분뇨의 자원화·재활용 촉진 및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을 통한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

□ 지원대상 및 기준

-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유기질비료를 직접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2. '08 추경 예산(안) 요구

- 유기질비료지원 : 62,000백만원
 - 추가확대물량 : 457천톤×58,000원/톤 = 26,506백만원
 - 당초 사업량 단가인상 : 1,543천톤×23,000원/톤 = 35,489백만원

3. 추경필요성

- 화학비료 가격이 '07.12월말 대비 '08.6.19일 기준 100%이상 인상에 따라 화학비료 대체 사용에 필요한 유기질비료 지원을 확대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친환경농업 유도 필요
 - 지원물량 : (당초) 1,543천톤 → (조정) 2,000(증 457)
※ 총 판매량 3,088천톤중 지원대상 물량은 2,000천톤(약 64.8%)임
 - 지원단가 : (당초) 700원/20kg → (조정) 1,160(증 460)
 - 지원금액 : (당초) 54,000백만원 → (조정) 116,000(증 62,000)
- 사업확대 및 지원단가 상향조정에 따른 소요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여 지원

4. 추경 산출내역

- 유기질비료지원 : 2,000천톤, 62,000백만원
 - 추가확대물량 : 457천톤×58,000원/톤 = 26,506백만원
 - * 단가 : 1,160원/20kg(포)×50포/톤 = 58,000원/톤
 - 당초 사업량 단가인상 : 1,543천톤×23,000원/톤 = 35,489백만원
 - * 단가 : 460원/20kg(포)×50포/톤 = 23,000원/톤
 - 1,160원/20kg-700원/20kg = 460원/20kg

5. 기대효과

- 화학비료 가격 급등으로 농가의 비료구입비 부담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유기질비료 사용 확대로 농가의 비료비 부담 완화
 - 유기질비료 공급 확대를 통한 농가의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유도
- 유기질비료 사용 확대는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화학비료 사용을 감축시켜 토양·수질오염 예방 등 국토환경 보전에 기여
 -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될 계획이므로 가축분뇨의 자원화 이용을 더욱 촉진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어려움 해결 가능

<참고자료>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비료 생산·판매현황

(단위 : 톤)

	'04		'05		'06		'07	
	생산	판매	생산	판매	생산	판매	생산	판매
합 계	3,108,850 (2,873,145)	2,575,833 (2,365,175)	3,248,710 (2,988,103)	2,640,654 (2,412,792)	3,832,405 (3,476,266)	3,093,825 (2,777,889)	3,960,622 (3,661,626)	3,087,570 (2,861,938)
1. 유기질비료	261,526 (201,642)	235,986 (186,368)	389,371 (325,151)	340,646 (290,151)	445,585 (381,555)	363,738 (320,283)	553,124 (431,147)	464,764 (389,015)
○ 혼합유박	(107,626)	(99,561)	(136,065)	(123,847)	(127,143)	(116,487)	(170,240)	(156,604)
○ 아미노산발효(박)	45,290	41,653	39,633	32,420	42,632	30,916	45,224	36,473
○ 혼합유기질	(93,237)	(86,086)	(187,182)	(164,903)	(244,494)	(194,212)	(251,178)	(223,038)
○ 중제피혁분	7,406	1,405	8,651	3,160	9,520	3,462	11,587	8,300
○ 기타채종유박	2,946	2,704	6,575	6,015	2,107	1,759	3,577	3,172
○ 골 분	3,545	3,174	8,036	7,673	8,336	6,705	5,188	4,613
○ 계분가공비료	-	-	-	-	500	150	1,070	830
○ 어박	697	682	1,325	867	394	464	1,028	549
○ 유기복합비료	(779)	(721)	(1,904)	(1,761)	(9,918)	(9,584)	(9,729)	(9,373)
2. 부산물비료	2,847,324 (2,671,503)	2,339,847 (2,178,807)	2,859,339 (2,662,952)	2,300,008 (2,122,641)	3,386,821 (3,094,711)	2,730,087 (2,457,606)	3,407,228 (3,230,479)	2,621,536 (2,472,923)
○ 퇴비	(2,612,172)	(2,136,569)	(2,512,611)	(2,031,732)	(2,898,072)	(2,315,795)	(2,962,078)	(2,260,296)
○ 그린(1급)퇴비	(59,331)	(42,238)	(150,341)	(90,909)	(196,639)	(141,811)	(268,401)	(212,627)
○ 분뇨잔사	321	321	482	482	40	40	330	330
○ 부엽토	8,870	5,365	8,788	5,297	6,833	3,135	6,772	4,105
○ 아미노산발효부산액	84,026	83,555	98,077	96,589	75,186	74,774	21,394	20,998
○ 건 계 분	31,236	27,411	33,236	30,704	156,554	150,624	40,825	33,163
○ 부숙왕겨 및 톱밥	46,495	37,166	42,029	36,594	32,898	28,356	27,317	22,494
○ 토양미생물제제	5,741	4,436	9,743	5,073	16,597	13,198	59,552	47,957
○ 기타	3,132	2,786	4,032	2,628	4,002	2,356	13,137	12,650

※ 정부 보조비종(5)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퇴비, 그린(1급)퇴비

3. 화학비료가격 및 수급안정대책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2007예산	2008예산		
		본예산(A)	추경예산안(B)	증감(B-A)
○화학비료가격 및 수급안정대책	-	-	30,150	30,15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화학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을 통한 민생 안정을 위해 화학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내용 : 화학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의 비료구입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가의 비료 구입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
- 사업기간 : 2008년
- 총사업비 : 302억원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1,800원/20kg(정액지원)
- 시행주체 : 시·도 및 농협중앙회(지역농협)
- 사업규모 및 내용
 - 사업규모 : 333천톤(하반기 소요량 341천톤의 97.8%)
 - 사업내용 : 가격인상에 따른 농가부담 완화를 위해 비료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근거 및 추진 경위

- 지원근거 : 비료관리법 제7조(비료의 공급)
- 추진경위 : 비료값 급등에 따른 정부의 민생안정대책에 포함

□ 지원대상 및 기준

- 비료 제조업체가 중앙회와 계약을 통해 농가에 공급(판매)하는 비료로서 금년 6.19자로 인상된 비료(49종)

2. '08 추경 예산(안) 요구

□ 가격안정대책 지원 : 302억원

○ 1,005억원(추가 부담 예상액)×정부 30% = 30,150백만원

* 가격 인상에 따른 농가의 추가부담 예상액은 1,005억원이며 고통분담차원에서 정부 30%, 농협과 업계 40%, 농가에서 30%를 부담

* 추가부담 예상액 : 333천톤(하반기 소요량 341천톤의 97.8%)×503천원/톤
(1.1~6.18까지 비종별 평균가격)×60%(인상율) = 1,005억원

<지원대상 물량 > : 333천톤(341천톤중 연평균 증감을 2.2% 차감)

- 화학비료 연간 사용량 : 1,621천톤(수도작 : 1,306, 원예용 : 315)

* 수도작 1,306천톤 중 기 확보된 965천톤은 년초 인상(24%)된 가격으로 공급되었으므로 추가 인상대상 물량은 341천톤임

3. 추경필요성

○ 국제 비료원료가격 급등으로 화학비료가격이 '08. 상반기보다 6.19자로 63%가 추가 인상됨(당초 4~5월 원자재 가격동향을 근거로 60%수준 인상 추정)

- 유기질비료는 수도작 농가에서 추수 후부터 모내기 전까지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6월 현재 모내기가 끝난 시점에서는 추비로 화학비료 사용이 불가피한 시기임에 따라 화학비료가격 인상으로 인한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비료가격안정대책 추진 필요

4. 추경 산출내역

○ 1,005억원(추가 부담 예상액) × 30%(정부 지원비율) = 30,150백만원

- 추가부담 예상액 : 333천톤 × 503천원/톤 × 60% = 1,005억원

* 고통분담 차원에서 가격 추가 인상분에 대해서 정부 30%, 농협과 업계 40%, 농가에서 30%를 부담

5. 기대효과

□ 화학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의 비료구입비 부담 완화

○ 화학비료 가격 60% 인상분의 약 30%를 정부가 부담함으로써 농가 부담 18% 완화

- 정부 지원으로 농협과 업계가 고통분담에 동참하여 인상비율 60% 중 24%를 부담

○ 농가는 정부 및 농협 등의 부담액을 감안시 현재보다 약 18% 인상된 가격으로 비료를 구입하여 사용이 가능함

화학비료 가격인상 내역

(20kg, 원)

비종명		'07.12 가격	종전(A) (‘08.1~6.18)	현행(B) (‘08.6.19~)	인상율 (B/A)
요소	그레놀	9,750	12,400	20,700	66.94
	프릴	9,750	12,400	20,700	66.9
유안		3,600	4,550	9,800	115.4
용성인비	육지	6,950	7,950	11,550	45.3
	제주	6,950	7,950	11,550	45.3
용과린		6,850	7,300	11,650	59.6
황산가리고토		7,900	9,700	19,150	97.4
염화加里		7,850	9,400	19,800	110.6
21-17-17		9,850	12,950	22,000	69.9
17-21-17		9,250	12,000	21,000	75.0
신세대(신)		9,100	11,600	19,150	65.1
플러스3신		9,050	11,550	19,150	65.8
쌀맛나		7,100	8,500	12,850	51.2
도우미벼		7,950	8,850	14,100	59.3
으뜸골드		7,450	8,900	14,100	58.4
한아름		7,200	8,550	12,850	50.3
청풍한아름		7,100	8,800	13,950	58.5
알찬들		7,150	8,450	12,850	52.1
흙사랑		8,500	10,500	16,700	59.0
맛도복		7,000	8,500	12,850	51.2
21세기		8,400	10,300	16,700	62.1
13-13-(13)		7,650	9,850	16,400	66.5
골드21		9,650	12,400	21,000	69.4
참세대21		7,800	10,300	16,700	62.1

비종명	'07.12 가격	종전(A) (‘08.1~6.18)	현행(B) (‘08.6.19~)	인상율 (B/A)
한포로300	10,850	13,150	21,550	63.9
으뜸OK	8,600	10,400	16,700	60.6
땅심비료	8,200	9,950	16,050	61.3
알뜰미	7,900	10,250	15,400	50.2
18-0-16	7,700	9,550	14,850	55.5
고BB	8,200	10,600	16,700	57.5
고BB(황산)	8,250	10,650	17,050	60.1
고BB(셀포)	8,350	10,800	16,950	56.9
저BB	7,350	9,000	14,300	58.9
저BB(황산)	7,800	8,950	14,650	63.7
저BB(셀포)	8,100	9,950	14,850	49.2
저도유기BB	8,050	9,550	14,750	54.5
콩비료	6,300	7,350	12,200	66.0
보리비료(14-15-8)	7,800	9,450	16,050	69.8
신단한번	14,950	17,200	27,500	59.9
단한번NS	13,700	15,400	25,300	64.3
UF복비	11,950	13,350	21,900	64.0
오래가	14,150	15,300	25,300	65.4
오래가골드	16,200	17,550	28,600	63.0
하나로	11,300	13,700	23,100	68.6
롱스타	13,950	15,300	25,300	65.4
한번에OK	12,450	14,700	24,200	64.6
엔텍21	19,800	25,200	40,500	60.7
엔텍퍼펙트	23,100	29,350	47,500	61.8
땅심21	-	10,450	16,700	59.8
측조로(18-4-4)	-	14,300	23,100	61.5
일회만(24-5-10)	-	16,700	26,400	58.1
계(49품목)	9,475	11,603	18,916	63.0

<참고자료2>

비료 가격 안정대책 추진

◇ 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농업인 부담을 완화하고,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공급, 녹비사업을 통해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연계 추진

가 현황 및 평가

- 국내 화학비료 생산량은 '07년 기준, 총 339만톤이며 이중 162만톤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177만톤(대북지원 30만톤 포함)은 수출
 - 162만톤 중 131만톤은 수도작용, 31만톤은 원예용으로 공급
 - 총 11개 업체 중 남해화학 등 4개 업체가 국내소요의 81% 공급
 - 농가에 대한 화학비료 공급은 농협중앙회에서 전체 소요량을 일괄 구매하여 지역농협을 통해 이루어짐

- 최근,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재배면적 확대 등으로 비료 수요량이 크게 증가하여, 화학비료 및 원료가격이 급등 추세
 - 화학비료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대폭상승에 따라 비료가격 인상 불가피

- 화학비료 가격은 평균 63% 인상(6.19)

【 주요 비료종류별 인상내역 】 (단위 : 원/20kg)

구 분	'07가격	'08.1~6.19(A)	'08.6.19~(B)	인상율(B/A)
요 소	9,750	12,400	20,700	66.9
21-17-17(복비)	9,850	12,950	22,000	69.9
18-0-16(이삭거름)	7,700	9,550	14,850	55.5
용성인비	6,950	7,950	11,550	45.3

※ 모내기 후 수도작 농가에 필요한 비료는 화학비료로서 가격 인상에 따라 농가 부담은 크게 증가

나 향후 추진계획

- ◇ 단기적으로 농가의 부담경감을 위한 **한시적 지원방안 검토**
- ◇ 중장기적으로 토양 개량을 통한 **화학비료 사용절감 지속 추진**

< 단기 대책 >

- 비료가격 인상에 따른 농가부담 완화 및 화학비료 사용 감축을 위해 **유기질비료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추진**(2.4부터)
 - 지원물량을 당초 154만톤에서 200만톤으로 늘리고, 구입비 보조율도 700원/20kg에서 1,160원 수준으로 확대
 - * '08 유기질비료 지원계획 : (현재) 154만톤/540억원 → (수정) 200/1,160
 - 추가예산 소요 620억원은 추경예산에 반영 추진
- **주요 비료원료에 대해 무세화 추진**('08.4~12까지 한시적)
 - 요소, 무수암모니아에 대해 관세 0% 적용(연간 98억원 절감)
- 화학비료가격 추가상승분의 30%를 정부에서 보조지원하고 농협(업계)에서 40%를 부담하는 방안 추진
 - 농가에는 인상된 가격으로 우선 구매하고 정부지원액은 추경 예산 확정시 농협을 통해 지원
 - 정부지원액 : 302억원(지원단가 : 1,800원/20kg)
 - * 가격인상으로 인한 농가 추가부담 총액 : 1,005억원

< 중장기 대책 >

□ '13년까지 화학비료 평균 사용량('99~'03평균) 40% 감축 추진

- 감축목표 : ('99~'03) 375kg/ha →('07) 340 →('08p) 290 →('13) 225

* 양분 수급상 소요량 대비 질소는 113%, 인산은 125% 과잉시비

□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토양 개량 지원 지속 추진

○ 유기질비료 지속지원으로 토양의 비옥도 향상

- 수도작 농가의 사용량 확대를 위한 시비방법 개발보급(농진청)

○ 석회 및 규산질비료 등 토양개량제 확대 공급으로 화학비료

흡수율 향상을 통한 사용량 감축 유도

- 금년부터 공급주기를 3년 1주기(당초 4년 1주기)로 줄이고 '09년

부터 분상(粉狀)을 전량 입상(粒狀)으로 공급 추진

* pH5 이하시 화학비료 이용률 감소 : 질소 57%, 인산 66%, 가리 54%

○ 자운영 등 녹비작물 재배확대로 토양의 지력증진 등 유도

* 자운영 1ha 재배시 화학비료 대체량 : 96kg

□ 화학비료 절감 필요성 등 적극적인 정책홍보 지속 추진

○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및 푸른들가꾸기 사업추진으로 인한

지력증진 및 화학비료 절감효과 등 홍보 강화

- 리후렛 10만부 배포(6.2), 전문지 광고 2회(7~8월) 등 추진

4. 살처분 보상금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백만원)

구 분	2007예산	2008예산		
		본예산(A)	추경예산안(B)	증감(B-A)
○ 살처분보상금	100,000	70,000	120,000	50,00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가축 및 오염 물건의 살처분(폐기)에 따른 보상금(장려금) 지급
- 가축방역사업 추진 관련,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록·투약의 실시로 인해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 또는 유·사산 태아에 대한 보상금 지급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71 ~ 계속
- 총사업비 : - ('07년 : 100,000백만원)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지원형태 : 보상금
- 지원조건 : 국비 100%
- 지원대상 :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 및 오염물건 폐기에 대한 보상금 지급
- 사업시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보상금 등)
- 추진경위
 -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 및 오염물건 폐기에 대한 보상금 지급

2. '08 추경예산(안) 요구

□ 50,000백만원(국고보조 100%)

- 브루셀라병 등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부족액 50,000백만원(브루셀라병 48,800, 기타 1,200) 반영

※ '08년 보상금 총 소요액 : 120,000백만원(현행 70,000 + 추경 50,000)

- AI : 67,000, 브루셀라병 48,800, 결핵병 등 기타 4,200

- '08년 예산 집행 및 추가(추경예산) 소요 산출액

(단위 : 백만원, 천두)

구 분	기 지급액 (배정액)		미 지급액 ('08.7월기준)		연말까지 추가 소요액(예상)	합 계
	두수	금액	두수	금액	금액	금액
AI	8,460	67,000	-	-	-	67,000
브루셀라병	5	(14,600)	4	10,700	38,100	48,800
기타	3	3,000	-	-	1,200	4,200
계	8,468	70,000	4	10,700	39,300	120,000

※ 기 지급액 중 브루셀라병(14,600백만원)은 '07년도 이월예산으로 '08년 예산액에는 미포함

※ AI 기 지급액(67,000백만원)은 배정액 기준이며, 일부는 아직까지 실소요자에게 미지급

※ 최근 3년간 살처분 보상금 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합계	소			돼지			닭	기타
		브루셀라	결핵	기타	열병	오제스키	기타	AI	
'05년	104,700	99,700	1,800	100	400	500	400	-	1,800
'06년	184,800	171,300	1,900	100	300	300	-	10,500	400
'07년	85,500	67,800	2,000	100	40	100	400	14,800	300

3. 추경필요성 및 소요검토

□ 추경 필요성

- 금년 예산(700억원)은 브루셀라병, 돼지열병, 결핵병 등 일반 질병의 방역 과정에서 살처분에 소요되는 보상금을 편성·운영
- 금년 4~5월 예상하지 못한 AI가 전국적으로 발생(총 33건), 확산 방지를 위해 닭·오리 8,460천수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함에 따라 보상금 670억원 지출

- AI 보상금 지급으로 매년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브루셀라병 등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부족액 500억원 추가 지원 필요
- AI 등 정부의 살처분 조치에 적극 협조한 농가에 대해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부족한 예산의 조기 확보 필요

□ 사업량

- '08년 보상금 총 소요액 : 1,200억원(현행 700 + 추경 500)
- AI : 670, 브루셀라병 488, 결핵병 36, 돼지열병 등 6

4. 기대효과

- 브루셀라병·AI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살처분 조치에 적극 협조한 축산 농가의 생계 및 생활안정 지원
- 살처분 등 재발방지 조치를 통한 가축전염병 조기 청정화 유도

5. 연근해어선 감척(지자체)

<농특회계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백만원)

구 분	2007예산	2008예산		
		본예산(A)	추경예산안(B)	증감(B-A)
○ 연근해어선 감척	129,417	133,800	368,800	235,00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업목적 :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업 경쟁력 제고
- 필요성
 - WTO/DDA협상 진전, FTA체결 확산, 어업자원의 감소 및 고유가 지속 등 출어환경 악화
 - 어업인의 감척요구 확대와 어업여건의 변화에 적극적 대처 및 자원 회복으로 지속적인 어업영위 필요

□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하여 소유어선 폐선 및 어선등록 말소, 어업허가 취소를 하는 어업인에게 어선·어구 잔존가치액 및 폐업지원금 지원
- 사업기간 : '94년 ~ '10년
- 총사업비 : '08까지 14,359억원
- 지원형태 : 지자체 경상보조
- 지원기준
 - 연안어선 : 국고 80%, 지방비 20%
 - 어선·어구 잔존가치액 : 국고 100%
 - 폐업지원금 : 정액(100%이내 최저 입찰제)
 - 근해어선 : 국고 100%
 - 어선·어구 잔존가치액 : 국고 100%
 - 폐업지원금 : 정액(업종·톤급별로 50% 지원)

※ 폐업지원금 : 업종·톤급별 산정한 어업 수익액의 3개년분

※ 입찰제 : 폐업지원금에 대해 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로 제시한 어업인
부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

※ 정액제 : 사업신청시 제시한 폐업지원금을 정액으로 지원하는 방식
(사업대상자 선정은 감척우선순위에 의해 정함)

○ 시행주체 : 시·도(시·군·구)

○ 사업규모 및 내용

- 당초 : 연안어선 2,000척, 근해어선 84척 등 1,338억원

- 추경 : 연안어선 1,500척, 근해어선 400척 2,350억원

- 합계 : 3,688억원(당초 예산액 1,338억원 + 추경예산 요구액 2,350)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1조(어업구조개선의 촉진 등)

○ 추진경위

- 1992년 연근해어업구조조정을 위한 계획수립 및 조사·연구

· 조사 당시 어선세력이 자원수준 대비 23~53% 과도한 것으로 평가

- 1994년부터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추진

· 연안어선 : 세망을 사용하여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 우선
감척(연안안강망, 낭장망, 해선망어업)

· 근해어선 : 대형선망, 대형트롤 등 어획강도가 큰 업종 감척

- 1999~2002년까지 어업협정체결지원특별법에 의한 국제규제감척 추진

□ 지원대상 : 감척사업 참여 어업인

2. '08 추경 예산(안) 요구

□ 2,350억원(국고보조) ※ 지방비 188억원은 별도

○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일환으로 유류소모량이 큰 쌍끌이대형기저, 대
형트롤, 대형선망, 근해채낚기 등 고유가 영향을 크게 받은 업종 위
주로 감척실시

- '08년도 예산 1,338억원에 추경 2,350억을 추가하여 연안어선 3,500척,
근해어선 484척 감척

※ '08 당초 예산 : 연안어선 2,000척/1,000억원, 근해어선 84척/335억원, 기타 실태조사 3억원

※ 연도별 감척물량 및 예산소요액 : 7,829억원('07년 이후 투자액)

구 분	'07	'08예산	'09요구	'10계획	'11	'12
자체감척 계획 (척 : 근해/연안)	1,294 (84/2,836)	3,688 (484/3,500)	1,295 (324/0)	1,256 (314/0)		
중기재정계획 (척 : 근해/연안)	1,294 (84/2,836)	1,338 (84/2,000)	1,600 (400/0)	1,600 (400/0)	1,000 (250/0)	1,000 (64/1,488)

※ 당초 중기재정계획보다 조기집행('10년 사업완료)

3. 추경필요성

- 연근해어업의 유류의존도는 타 산업분야에 비해 높아 현재 지속되는 고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음
 - 중간투입 중 유류비 비중은 26.3%에 달해 전체 77개 산업분야 중 3위 (유기화학기초산업 1위, 비금속광물산업 2위) 수준('03)
- 고유가 지속에 따라 채산성이 악화되어 출어포기 등 수산물 생산활동 위축
 - 출어포기로 인한 어업인의 소득저하와 어촌지역 붕괴 우려

※ 어업생산량(천톤) : 2,410('81) → 2,514('00) → 2,487('03) → 2,714('05) → 3,032('06) → 3,275('07)

※ 유류소비량(천드럼) : 2,377('81) → 7,628('00) → 7,316('03) → 6,391('05) → 6,318('06) → 6,266('07)

4. 추경산출내역

□ 소요산출 내역

- 연안어선 : 50백만원 × 1,500척 = 750억원(국비 80%)
[지방비 188억원(20%)은 지자체 추경에 반영]
- 근해어선 : 400백만원 × 400척 = 1,600억원

5. 기대효과

- 고유가 상황을 고려, 유류비 비중이 높은 업종의 감척확대로 어업경영 개선 도모
- 어족자원에 적합한 어선세력 감축사업으로 인한 어업생산성 증대 및 어업경쟁력 제고
 - 연근해어선 톤당 생산량 증대
 - ('00년) 3.0톤 → ('02년) 3.0톤 → ('04년) 3.2톤 → ('07년) 3.7톤

< 붙임1 >

근해어업 세부 업종별 중장기 감척목표

(단위 : 척)

	'06년말 어선세력 (A)	장기 목표 (2011이후포함 B)	중 기 목 표			감척 후 어선세력 (A-C)	2011년 이후 추 가 감 척 소 요 (B-C)
			계 (C)	'07년	'08~'10		
계	3,622	1,593	1,280	84	1,196	2,342	313
대형기저 (외)	47	20	20	-	20	27	-
대형기저 (쌍)	88	36	24	4	20	64	12
동해구기저	42	32	23	-	23	19	9
서남구기저 (외)	44	21	17	-	17	27	4
서남구기저 (쌍)	18	10	8	-	8	10	2
대형트롤	58	28	28	-	28	30	-
동해구트롤	39	15	15	-	15	24	-
대형선망	191	80	67	4	63	124	13
소형선망	105	33	29	-	29	76	4
근해채낚기	679	228	148	16	132	531	80
기선권현망 (1구)	355	164	106	4	102	249	58
기선권현망 (2구)	116	47	27	-	27	89	20
근해자망	464	193	137	13	124	327	56
근해안강망	266	99	99	4	95	167	-
근해봉수망	9	1	1	-	1	8	-
근해자리돔들망	-	-	-	-	-	-	-
잠수기 (1구)	7	4	3	-	3	4	1
잠수기 (2구)	11	6	5	-	5	6	1
잠수기 (3구)	129	54	46	-	46	83	8
잠수기 (4구)	52	22	19	-	19	33	3
잠수기 (5구)	37	16	14	-	14	23	2
근해장어통발	83	49	40	6	34	43	9
근해기타통발	145	56	56	5	51	89	-
근해문어단지	22	5	5	-	5	17	-
근해형망 (1구)	87	62	62	-	62	25	-
근해형망 (2구)	33	24	24	-	24	9	-
근해연승	495	288	257	28	229	238	31

※ 「근해어선 감척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 ('07.12 해양수산부)

※ 연구용역의 중기와 장기 목표 간의 상충되는 업종(동해트롤, 안강망, 기타통발)에 대해 자체 조정

○ 중장기 감척 목표 및 소요예산 추정

	계	'07년	'08년	'09년	'10년
감척물량	1,280척	82	484	324	390
소요예산	5,084억원	294 (1,294)	1,935 (3,685)	1,295	1,560

※ 「물 량 : 연구용역 결과 적용 ('06년말 근해어선 3,622척의 약 35%에 해당)

↳ 소요예산 : 국고 4억원/척당, () 연안포함

< 붙임2 >

연안어업 중장기 감척목표

○ 연안어업 지역별 · 업종별 우선순위별 최적감척어선 척수

(단위 : 척수)

구분	제1순위	제2순위		제3순위	제4순위			합계
	선망	자망	통발	복합	조망	안강망	들망	
부산	4	26	168	457	0	0	1	656
인천	1	74	49	391	2	24	0	541
울산	0	11	57	64	0	0	1	133
경기	0	31	24	124	0	13	0	192
강원	36	113	6	364	0	0	1	520
충남	47	146	97	652	235	37	1	1,215
전북	24	82	61	556	11	13	1	748
전남	102	185	333	4,457	2	6	11	5,096
경북	48	123	47	349	0	0	0	567
경남	174	197	810	2,754	1	1	7	3,944
제주	18	8	2	1,688	0	0	2	1,718
합계	454	996	1,654	11,856	251	94	25	15,330

* '03년말 62,532척 기준 최적감척수준임(어선감척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 '05. 4 해양수산부)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연안어업 감척 심의의결('02.7.24.) : '03년말 연안 어선세력의 10% 수준인 6,300척('04~'08)을 우선 감척 후 재검토

○ 연안어업의 해역별 우선순위별 최적감척어선 척수

(단위 : 척수)

구분	제1순위	제2순위		제3순위	제4순위			합계
	선망	자망	통발	복합	조망	안강망	들망	
서해	72	333	231	1,723	248	87	2	2,696
남해	280	408	1,311	7,668	3	7	19	9,696
동해	84	247	110	777	0	0	2	1,220
제주	18	81	2	1,688	0	0	2	1,791
합계	454	996	1,654	11,856	251	94	25	15,330

* '03년말 62,532척 기준 최적감척수준임(어선감척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 '05. 4 해양수산부)

6. 수입양곡대

<양특회계 - 손익계정>

(백만원)

구 분	2007예산	2008예산		
		본예산(A)	추경예산안(B)	증감(B-A)
○ 수입양곡대	134,209	161,113	368,955	207,84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WTO 쌀 협상('04) 결과를 반영하여 MMA 수입쌀 매년 도입

□ 사업내용

- 지원내용 : '05년 225,575톤에서 '14년 408,700톤까지 매년 균등 증량(20,347톤)
- 지원기준 : 정액지원
- 사업규모 : 수입양곡(가공용현미 : 248,402톤, 밥쌀용 : 63,055톤)
 - 당초 : 1,611억원
 - * 가공용 : 248,402톤 × 540\$ × 920원 = 1,234억원
 - * 밥쌀용 : 63,055톤 × 650\$ × 920원 = 377억원
 - 추경 : 2,078억원 추가 요구
 - * 가공용 : 248,402톤 × 1,167\$ × 1,000원 = 2,899억원
 - * 밥쌀용 : 63,055톤 × 1,254\$ × 1,000원 = 790억원
 - 합계 : 기존 예산액 1,611억원 + 추경 요구액 2,078 = 3,689억원

- 현재(8월) 기준 추가 필요액 : 2,385억원(추경대비 307억원 증)
 - * 가공용 : 248,402톤 × 1,119\$ × 1,100원 = 3,057억원
 - * 밥쌀용 : 63,055톤 × 1,353\$ × 1,100원 = 939억원
 - 5월 대비 8월 장립종(태국산) 가격은 하락(국제가격 기준, 1,050\$/톤 → 690\$)하였으나, 환율상승(1,000원/\$ → 1,100원/\$, 중립종(미국산) 가격 상승(국제가격 기준, 1,000\$ → 1,175\$) 등으로 추경 대비 307억원 증액 필요
 - 도입단가는 국제가격에 운임 등 제비용을 포함한 개념
- 합계 : 기존 예산액 1,611억원 + 추경 필요액 2,385 = 3,996억원
 - * 당초 추경액 대비 부족액(307억)은 양특회계 절감예산 등으로 총당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WTO 쌀 재협상에 따른 수정양허이행계획서('05.4.12)
- 추진경위
 - 협상실시 : '04.5~12월, 협상결과 WTO 통보 : '04.12.30
 - WTO 검증 : '05.1~4월(원안확정), 확정발표 : '05.4.12

2. '08 추경예산(안) 요구

□ '08년도 추경 요구(안) : 2,078억원

- '08 MMA 물량(가공용현미 : 248,402톤 밥쌀용 : 63,055톤)을 도입하여 쌀 수입의무 이행
- '08년도 당초예산 1,611억원에 추경 2,078억을 추가하여 총 3,689억원 지원

3. 추경필요성

- 국제쌀값 상승으로 '08년도 MMA 수입쌀 의무 도입을 위한 양곡대금 부족
- ※ 국제쌀값 상승율(전년말대비, '08.5월말기준) : 장립종 180%, 중단립종 60%상승
 - 밥쌀용(장립종) : 375 → 1,050\$, 밥쌀용(중단립종) : 625 → 1,000\$

4. 추경 산출내역

□ 추가지원 내용(재원소요 산정기준)

- '08년도 MMA 수입양곡대 부족액 지원 : 207,842백만원

[단위 : 톤, US\$, 백만원]

구분	'08예산(A)				실소요예산(B)			과부족 (B-A)
	물량	단가	환율	금액	단가	환율	금액	
가공용	248,402	540	920	123,406	1,167	1,000	289,885	166,479
밥쌀용	63,055	650	920	37,707	1,254	1,000	79,070	41,363
계	311,457			161,113			368,955	207,842

주) 추정단가는 5월말 국제쌀값기준 : 세부자료(붙임1)

《 8월 기준 시세 적용 단가 》

[단위 : 톤, US \$, 백만원]

구분	'08예산(A)				실소요예산(B)			과부족 (B-A)
	물량	단가	환율	금액	단가	환율	금액	
가공용	248,402	540	920	123,406	1,119	1,100	305,699	182,293
밥쌀용	63,055	650	920	37,707	1,353	1,100	93,877	56,170
계	311,457			161,113			399,576	238,463

주) 추정단가는 8월 국제쌀값기준 : 세부자료(붙임1)

※ '08년 MMA 가공용 쌀 계약현황

- 가공용 총량쿼터 81,389톤 중 1회차 22,608톤에 대한 입찰(8.19) 결과, 태국산 장립종으로 752\$/톤에 낙찰자 결정(8.25일,)

5. 기대효과

- 떡·면류, 과자, 주류 등 가공식품의 원료용으로 원가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어,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식료품 물가안정에 기여

※ '08 가공용 수요물량 중 MMA 수입쌀 비중은 60% 수준(정미기준)

- ('08 가공수요 전망) 374천톤, ('08 가공용수입쌀) 224천톤(정미기준)

- 쌀 수입의무 이행에 따른 무역제재 등 통상마찰 방지

※ MMA 쌀 수입물량은 관세화를 유예하는 조건으로 의무수입하기로 합의된 사항

국제쌀값 동향

구분	곡종별	'07년		'08년(5월말 기준)				'08년(8월 기준)			
		낙찰단가 (\$)	(국제가격) '07.12월말	추정단가 (\$)	국제가격		총인상 요인	추정단가 (\$)	국제가격		총인상 요인
					국제가격	국제가격 상승률			국제가격	국제가격 상승률	
가공용 (현미)	단립종	594.30	550	1,138.68	900	63.6%	91.6%	1,245.00	1,058	92.4%	109.5%
	중립종	672.92	550	1,168.19	900	63.6	73.6	1,247.00	1,058	92.4	85.3
	장립종	428.92	338	1,242.15	945	179.6	189.6	752.00	621	83.7	75.3
	(가공용 계)	580.90		1,167				1,119			
밥쌀용 (백미)	단립종	692.00	625	1,300.96	1,000	60.0	88.0	1,370.00	1,175	88.0	98.0
	중립종	676.91	625	1,150.75	1,000	60.0	70.0	1,372.00	1,175	88.0	102.7
	장립종	485.00	375	1,406.50	1,050	180.0	190.0	827.00	690	84.0	70.5
	(밥쌀용 계)	678.23		1,254				1,353			

※ 국제가격은 전년말 계약시점의 국제가격(FOB)과 '08.5월·8월말 기준 국제가격(FOB)를 비교

※ 환율은 현재 수준 환율(1,1000원/\$) 수준 적용

※ 곡종별 물량은 밥쌀용은 국별쿼터 배분을 감안, 가공용은 '07년도 곡종별 낙찰물량 비율을 감안

※ '07년 낙찰단가는 용도별, 곡종별 낙찰단가를 가중평균하여 적용

※ '08년 추정단가는 '07년 낙찰단가 대비 곡종별 총 인상요인(국제가격상승률, 기타 가격상승요인)을 곱하여 적용

※ 총인상요인은 『국제가격상승율 + 운임 등 제비용상승율(10%) + 기타인상율』을 적용

※ 총인상요인 중 기타인상율은 단립종(중국산) 세급환급폐지 13%, 수출세 5%를 의미

MMA 수입쌀 도입 및 관리

1. 쌀 협상 결과

□ '94 UR 협상 결과

- 쌀 관세화를 '95~'04년까지 유예 받았으며, 국내 소비량('88~'90년 평균)의 1~4%에 해당하는 물량의 쌀을 의무 수입
 - 의무수입물량 : ('95) 51천톤(1%) → ('04) 205천톤(4%)
- '05년 이후 관세화 유예 지속 여부는 '04년에 결정하기로 함

□ '04년 쌀 협상 결과

- '05~'14년까지 추가로 관세화를 유예하되 의무수입물량은 '04년 수입 물량(205,228톤)을 기준으로 매년 20,347톤씩 균등 증량
- 밥쌀용은 총 물량 중 매년 4%씩 균등 증량한 후 '10년분부터 30% 유지
 - 수입량(밥쌀용/가공용) : ('05) 226천톤(23/203) → ('08) 287(63/224) → ('10) 327(98/229) → ('14) 409(123/286)
- 이행후 5년차인 '09년도에 이행상황에 관한 다자간 중간 점검 실시
 - ※ 유예기간 중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으나, MMA 물량은 관세화로 전환하더라도 수입의무가 있음

2. MMA 도입관리 현황

- 수입방식은 국영무역 방식으로 가공용은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조달청이 수입, 밥쌀용은 전량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입 및 판매

3. 연도별 쌀 MMA 물량

□ 기준년도 : '88~'90년 평균식량소비량 (5,130,700톤)의 1~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정미(톤)	51천톤	64	77	90	103	103	128	154	180	205
(만석)	(35)	(44)	(53)	(63)	(72)	(72)	(89)	(107)	(125)	(143)
현미(톤)	57천톤	71	86	100	114	114	143	171	200	228
비율	1%	1.25	1.5	1.75	2.0	2.0	2.5	3.0	3.5	4.0

□ 쌀 협상이후 연도별 쌀 MMA 계획물량

기준년도 : '88~'90년평균 식량소비량 (5,130,700톤)의 4.397~7.966%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정미(A)	226천톤	246	266	287	307	327	348	368	388	409
(만석)	(157)	(171)	(185)	(199)	(213)	(227)	(241)	(256)	(270)	(284)
국별쿼터	205	205	205	205	205	205	205	205	205	205
총량쿼터	20	41	61	81	102	122	142	163	183	204
현미(환산)	251천톤	273	296	318	341	364	386	409	432	454
비율	4.397%	4.793	5.190	5.586	5.983	6.379	6.776	7.173	7.569	7.966
소비자 시판(B)	23천톤	34	48	63	80	98	104	110	117	123
(B/A)	10.0	14.0	18.0	22.0	26.0	30.0	30.0	30.0	30.0	30.0